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10 선고 2018가합102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예지, 이해원, 정형윤

피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종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변론 종결 2021. 4. 29.

판결 선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7.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 11. 8. 접수 제413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6. 4. 12.	E	기업은행 안양지점	중소기업 자금대출	212,500,000
2	2016. 11. 18.	F	G은행 G금융투자센터	B2B구매 자금대출	76,000,000
3	2017. 5. 12.	H	기업은행 안양지점	구매카드대출	210,800,000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손해금, 소정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그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 3)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상대처인 기업은행과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 1) D는 2018. 2. 9.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기업은행과 G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 2) 원고는 2018. 5. 21. 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의 원리금 214,875,185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의 원리금 212,017,493원, 합계 426,892,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로부터 그 중 185,600원을 회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6. 21. G은행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채무의 원리금 76,946,7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위 각 대위변제 직후 무렵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액(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합계 504,085,985원(=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426,892,678원 + G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6,946,764원 - 회수금 185,600원 + 확정손해금 743원 + 위약금 431,400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C과 D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

- 1) C은 2017. 11. 8. 피고 A과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134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D는 2018. 1.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접수 제101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1) 원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이 사건 증여계약은 C과 피고 A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올라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 A은 1998. 4.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7. 11. 8. 인천가정법원 2017호협754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8. 2. 8.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 ③ C은 피고 A과의 혼인기간 중인 2008. 6. 12.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은 2015. 9. 8. I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9. 23.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7. 8. 25.경 피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점, ⑤ 피고 A은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A이 C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C과 피고 A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43,562,332원 상당이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C의 전체 부동산가액의 1/3 정도이다.

1	이 사건 제1 부동산	82,000,000
2	정읍시 K 토지의 1/3 지분	13,021,666
3	정읍시 L 토지	35,910,000
4	정읍시 M 토지의 1/3 지분	7,350,666
5	정읍시 N 토지	105,280,000
6	정읍시 O 토지	
7	정읍시 P 토지	
8	정읍시 Q 토지	
9	정읍시 R 토지	
10	정읍시 S 토지	
11	정읍시 T 토지	
합계	243,562,332	

② C이 2017. 8. 25.경 피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실질가치는 6,200만 원(=8,200만 원 - 2,000만 원)에 불과하다.

③ 피고 A은 20년에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D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는 D의 영업을 위한 채무에 해당하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를 C과 피고 A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B 피고 B은 D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D가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주유소운영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8. 2. 9. D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1, 13, 14, 15, 1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부대 기계설비 일체	3,126,223,580
합계	3,126,223,580	
소극재산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569,930,000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6,000,000	
피고 B에 대한 유류대금채무	237,760,000	
U에 대한 유류대금채무	142,901,542	
V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3,300,000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23,023,125	

적극재산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부대 기계설비 일체	3,126,223,580
W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85,004,083	
X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0,000,000	
합계	3,607,918,75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다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2018. 1. 17. D에 대한 237,76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가압류(이 법원 2018카단100081)를 신청한 사실, ② D는 U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질 경우 더 이상 유류를 공급할 수 없고 기존 미수금 중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야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 B에게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이에 피고 B은 D와 사이에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25.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 ④ D는 Y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8. 1. 24. U에 4,6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을 변제하였으나, 추가적인 유류 공급은 받지 못한 사실, ⑤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가 U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운영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점, ⑥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 U 및 X의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 원고를 비롯한 D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가 있기 전이므로,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질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순열

판사유재영

판사박지숙

별지

1)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함